

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

의 안 번 호	49
--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96. 11. 29

제 출 자 : 한기원의원의외 8

1. 제안이유

의회사무국에 의정계가 신설됨으로 의회사무국의 사무를 의정계와 의사계로 구분하여 분장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의정활동 보좌기능을 강화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의정계의 분장사무를 의회기본 계획수립, 예산의 편성, 집행 등 의회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으로 하고 의사계의 분장사무는 본회의 및 위원회 의사진행 지원,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 수집, 조사 등 회의 진행에 관련한 사항으로 분장하고자 하는 것임

3. 관계법령

부산광역시 사하구 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조례 제2조 제3항

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

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직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중 “의사계”를 “의정계, 의사계”로 한다.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

제3조(사무분장) ① 의정계장과 의사계장은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.

② 의정계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

1. 의회 기본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
2. 의회 소관 예산의 편성, 집행, 결산에 관한 사항
3. 문서, 보안, 관인 관리
4. 의원등록 관리 및 의전에 관한 사항
5. 의원 및 사무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
6.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
7. 의회방청 참관,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
8. 의회활동 홍보자료에 관한 사항
9. 회의장 관리 및 기타 재산관리
10. 기타 의사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

③ 의사계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본회의 및 위원회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
2. 위원회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, 조사, 연구 및 보관 관리
3. 의사일정에 관한 사항
4. 위원회 의안처리 종합
5. 청원, 진정 등의 처리
6. 각종 의안접수, 배부, 이송 등 종합처리
7.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및 배부에 관한 사항
8. 의회보 및 의원수첩 제작 배부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.

신.구조문 대비표

현	개	정	안
제2조(하부조직) 사무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사계 및 전문위원을 둔다	제2조(하부조직)----- -----의정계,의사계 ----- -----.		
제3조(의사계) ① 의사계장은 지방행정 주사로 보한다 ② 의사계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 1. 의회 기본운영 계획의 수립. 시행 2. 의원의 등록관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3. 본회의 소집운영과 의사진행 보조 4. 본회의장 및 회의실 방청, 참관, 질서유지 5. 회의록 작성 및 발간, 보관 6. 청원 진정의 접수 및 처리 7. 의회운영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8. 의회활동 홍보계획의 수립 및 시행 9. 의회 시설장비 관리 및 물품수급 관리 10. 사무국 직원의 인사관리 11. 문서,보안,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, 회계에 관한 사항 12. 기타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	제3조(사무분장)① 의정계장과 의사계장은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 ② 의정계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. 의회 기본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. 의회 소관 예산의 편성, 집행, 결산에 관한 사항 3. 문서, 보안, 관인 관리 4. 의원등록 관리 및 의전에 관한 사항 5. 의원 및 사무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6.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7. 의회방청 참관,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8. 의회활동 홍보자료에 관한 사항 9. 회의장 관리 및 기타 재산관리 10. 기타 의사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		